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44
----------	------

발의연월일 : 2016. 12. 13.

발의자 : 황영철 · 박덕흠 · 경대수
이철규 · 박명재 · 권석창
김기선 · 염동열 · 유민봉
이양수 · 이종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유아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숲 지킴이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6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제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인증기준”을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직접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숲사랑소년단”을 각각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숲사랑소년단”을 각각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제18조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제19조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숲사랑소년단이”를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로,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사랑소년단”을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3항을”을 “제12조제4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은 이 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
가. · 나. (생 략)	----- .
다. <u>숲길체험지도사</u> :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숲길등산지도사</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 ⑥ (생 략)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p><u><신 설></u></p> <p><u>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생략)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u>2. <u>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도지사</u>	<p><u>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u></p> <p><u>⑧ -----</u></p> <p><u>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u></p> <p>-----</p> <p>-----.</p> <p>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현행과 같음)② ----- <p>-----</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국가가-----</u>2. <u>지방자치단체, 법인-----</u> <p>-----</p> <p>-----</p> <p>-----</p> <p>-----.</p> <p><u>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직접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u></p>
--	--

<p>③ ~ ⑤ (생략)</p> <p>제16조(<u>숲사랑소년단</u>) 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u>숲사랑소년단</u>을 설립한다.</p> <p>② <u>숲사랑소년단</u>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u>숲사랑소년단</u>의 시설·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p> <p>④ <u>숲사랑소년단</u>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⑤ <u>숲사랑소년단</u>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p>제16조(<u>한국숲사랑청소년단</u>) ① -</p> <p>-----</p> <p>-----</p> <p>----- <u>한국숲사랑청소년단</u></p> <p>년단-----.</p> <p>② <u>한국숲사랑청소년단</u>-----</p> <p>-----</p> <p>-----</p> <p>-----.</p> <p>③ ----- <u>한국숲사랑청소년단</u>-----</p> <p>-----</p> <p>-----</p> <p>-----.</p> <p>④ <u>한국숲사랑청소년단</u>-----</p> <p>-----</p> <p>-----</p> <p>-----.</p> <p>⑤ <u>한국숲사랑청소년단</u>-----</p> <p>-----</p> <p>-----</p> <p>-----.</p>
--	---

<p>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 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 ----- ----- -----.</p>
<p>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u>숲길체험지도사</u> 및 <u>숲사랑소년단이</u>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u>숲길체험지도사</u> 및 <u>숲사랑소년단</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u>숲길등산지도사</u>---<u>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u>----- -----<u>숲길등</u> <u>산지도사</u> 및 <u>한국숲사랑청소년단</u>----- -----.</p>
<p>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0조(지원) ----- ----- ----- ----- ----- -----.</p>
<p>1. ~ 5. (생 략) 6. 제16조에 따른 <u>숲사랑소년단</u></p>	<p>1. ~ 5. (현행과 같음) 6. -----<u>한국숲사랑청소년단</u></p>
<p>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2. (생 략)</p>	<p>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3. <u>제12조제3항을</u> 위반하여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u>제12조제4항을</u>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